

자원개발에 관한 베트남 법률제도

법무법인 청진

배 성 열¹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베트남은 총 60여 개의 광물자원과 5,000여 개의 광산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나, 부존량이 아시아 및 세계자원대국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이다. 석탄(대부분 무연탄), 석회석이 풍부한 편이고 보크사이트, 철광, 주석, 크롬, 동, 아연, 흑연, 운모, 티탄철 석, 니켈, 망간, 티타늄, 금, 인회석 등이 다양한 광물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석유 생산량은 아시아의 6대 생산국이며², 최근 수십년간 동남아시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베트남의 에너지·자원산업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며, 정부는 직접 또는 국영기업을 통해 자원 개발 및 수출입,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1986년 경제개방정책이 시행된 이후, 외국인투자법 및 2000년 석유법 개정 등을 통해 석유·대륙붕 개발이 활성화되었는데, 2000년에 개정된 석유법과 외국인투자법으로 인해 다국적 유전개발회사 등으로부터 3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이렇듯 베트남 정부는 다국적 자원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베트남 자원개발에 투자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베트남 자원개발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¹ 법무법인 청진 대표변호사, Email: seong@lawcj.ne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사, University of Houston Law Center LLM for Energy,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Law, 사법연수원 29기, 뉴욕주변호사

² 베트남 통계청 및 KOTRA 하노이KBC 자체종합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 (2015) 82면

II. 자원 보유 현황³

광종	단위	부존량	세계순위
원유 (2015)	Billion Barrels	4.4	25
석탄 (2013)	Thousand Short Tons ⁴	57	18
천연가스 (2015)	Billion Cubic Feet	376	46

(출처: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6. 3.)

1. 석유, 가스

성공적인 해저탐사를 통해 원유 보유량은 2011년 6억 배럴에서 2016년 현재 44억 배럴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베트남의 원유 보유량은 중국, 인도를 뒤이어 아시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까지 정제시설과 파이프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원유를 수출하고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었으나, Dung Quat에 첫번째 정제시설을 건설하였으며, Thanh Hoa지역에 약 90억불을 들여 새로운 정제시설과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1975년에 수 차례의 탐사시추를 통해 발견하였으며 현재는 베트남 국가 경제와 세수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Petrovietnam이 원유 및 가스 관련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며 베트남 안에서의 사업을 통제하고 있다.

2. 석탄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석탄의 대부분은 무연탄이며, Vinacomin 이라는 국영기업이 사실상 베트남 석탄 생산량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의 소비는 2000년 이후 연간 1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 순수입국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³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주요국 에너지 자원 현황 및 정책 (2015) 및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6. 03. 참조

⁴ 미국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Short ton 2,000 pounds(907,18474kg)을 의미한다. 비교개념으로는 'metric ton'(=1,000kg or 2,204.62262 pounds), 'long ton'(=2,200 pounds or 1,016.0469088kg) 등이 있다.

III. 베트남 법제 일반⁵

1. 헌법의 연혁과 사법의 개념

가. 베트남 헌법의 연혁

1945년 호치민을 주석으로 하여 수립된 베트남민주공화국은 1946.11. 09. 국회의결을 통해 베트남민주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이후로 총 3회에 걸쳐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1992년 개정헌법은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던 국가권력을 국회와 정부에 좀 더 배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고, 2001년에는 시장경제질서를 대폭 도입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3년 개정헌법의 경우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을 재확인공산당의 국가운영계획(1991, 2011년)과 전당대회,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의사항의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과 아울러 인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나. 헌법상 사법의 개념

1992년 헌법이 입법·행정·사법의 국가기관의 권한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베트남공산당(Vietnamese Communist Party)이 유일 정당으로서 국가 기구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의 정책을 법률과 결정사항으로 구체화시켜 행정기구에 하달하고 국가기관의 핵심적인 직책에 당원을 임명하여 국가기구의 활동을 감독하고 있어 정치체제의 실질적 운영은 베트남공산당이 담당하고 담당하며, 이는 2013년 개정헌법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즉,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개의 권력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지닌 단 하나의 권력으로 이해되며, 국가 업무의 분배·분업이라는 관념만이 인정된다. 이렇듯 행정권의 행사를 감시하거나 억제하는 ‘사법권’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된 것은 1959년에 소련식 법제도를 도입한 때부터이다.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분업의 관념 위에 서는 ‘사법’개념에 관하여 1996년에 출판된 국가와 법연구소편 ‘평론집’에서는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democratic centralism)의 원칙하에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을 실행하고, 사법권은 인민재판소에 있으며 사법권의 주요한 내용은 심리권이다”고 서술한 바 있다.⁶

⁵ 베트남 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과 정부형태개관-계경문(2009)

⁶ 베트남의 사법제도 개관-김치환 3면에서 ‘Binh Luan Khoa Hoc Hien Phap Nuoc Cong Hoa Xa Hoi Chu Nghia Viet Nam 1922, Nha Xuat Bab Khoa Hoc Xa Hoi Ha Noi 1996의 74면을 인용한 것을 재 인용한 것이다.

2. 베트남 법제의 특성과 법원

가. 베트남 법제의 특성

베트남은 사회주의 법제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구소련의 법을 기초로 하여 발전해왔다. 베트남의 하위법규는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하위법규는 상위법규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형식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실제 효력에 있어서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지시 또는 의결이 상위 법령에 사실상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⁷⁾는 점이 사회주의 법제를 토대로 하는 베트남 법제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나. 법원⁸⁾(法源)

1) 헌법(Constitution)

전국 범위의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규정으로 국회에 의해서 제정 및 개정되는 최고의 법적 효력을 보유한 최상위 법이다.

2) 법률(Law)

법률은 헌법 다음가는 지위를 가지며 국회가 제정한다. (헌법 제70조 제1항)

3) 법령(Ordinance)

법령은 국회로부터 부여 받은 문제에 관해 국회상무위원회가 공포한다. (헌법 제74조 제1항)

4) 명령(Order)

국가 주석이 공포하는 것이며, 국가주석의 임무의 달성 및 권한의 수행을 위하여 공포된다. (헌법 제91조)

5) 의정(Agreement by Conference)

헌법, 국회의결,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국가주석의 영과 결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의결, 의정을 발한다. (헌법 제96조 제1항)

6) 통지(Legal Notice)

상급기관(국회, 국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수상)의 법규범에서 해당분야의 관리를 위임하거나 자신의 관리영역에 속한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부 장관, 부와 동등한 기관의 기관장, 정부직속 기관장이 공포하는 법률 문건을 말한다.

7) 결정(Decision)

각 기관, 그 기관 직속단위의 활동과 조직에 관하여 해당분야의 경제적 기술적 한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자신의 관리기능 혹은 정부가 위임한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법률 문건이다.

8) 지시(Instruction)

해당기관과 상급기관의 법률규범 문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분야에 속한 기관과 단위의 활동을 감시, 협의, 독촉, 지도하는 방법을 규정한 문건이다.

⁷⁾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계경문 • 김종욱 • 이경희(2009) 130P

⁸⁾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법령구성 체계- 주베트남대사관 (2010)

9) 의결(Resolution)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론과 표결을 거친, 회의제도에 따른 기관의 결정. 다수결 혹은 절대 다수결로 표결하는데, 국회와 국회 상무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제명, 국회의 임기단축이나 연장, 헌법의 개정은 정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입법, 사법, 행정 담당 기관별 법률문건 공포권>

기 관 명	공포 가능한 법률 문건	비 고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Hien Phap : 憲法) ○ 법률(Luat : 律, Bo Luat : 律) ○ 법령(Phap Lenh : 法令) ○ 의결(Nhai Quyet : 議決)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Lenh : 令) ○ 의결(Nghi Quyet : 議決)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Nghi Dinh : 議定) ○ 의결(Nghi Quyet : 議決) 	시행령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Quyet Dinh : 決定) ○ 지시(Chi Thi : 指示) 	
각부 장관, 부급 기관장, 정부직속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자(Thong Tu : 通諮) ○ 결정(Quyet Dinh : 決定) ○ 지시(Chi Thi : 指示) 	시행세칙
중앙직할시 및 성 등 지방인민평의회 (지방자치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Nghi Quyet : 議決) 	
중앙직할시 및 성 등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Nghi Quyet : 議決) ○ 지시(Chi Thi : 指示) 	
최고인민법원 재판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Nghi Quyet : 議決) 	
최고인민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Quyet Dinh : 決定) ○ 지시(Chi Thi : 指示) ○ 통지(Thong Tu : 通知) 	시행세칙

* 법률 문건 체계 : 의결 - 결정 - 지시 - 통지

IV. 자원개발 관련 법령 체제

1. 개요

베트남헌법⁹ 제53조에 의하면 모든 자원은 토지, 수자원, 자연자원 등의 소유권은 전인민(Entire People)에게 유보된 공공재임을 선언하고 있고, 자원에 관한 법률로는 광물자원법(Law on Minerals), 수자원법(law on water resources), 석유법(law on petroleum), 삼림보호 및 개발법(law on forest protection and development) 등이 있고, 동 법률 등의 시행을 위한 각종 시행령(Decree), 회보(Circular) 등이 있는바, 아래 표는 동 법령 등에 대한 개략적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분류	법령	내용	담당기관
헌법			국회
광물	광물법		산업통상부 자원환경부
	회보 No. 04/2012/TT-BXD	건축자재로서의 광물 수출에 대한 안내	
	회보 12/2016/TT-BCT	산업통상부의 광물 수출에 대한 2012. 12. 21. 회보 No. 41/2012/TT-BCT 규약의 개정 및 보완	
	회보 41/2012/TT-BCT	광물 수출에 대하여	
	회보 No.17/2012/TT-BTNMT	광물탐사 업무기관의 현황 제공	
	시행령 No. 60/2016/ND-CP	환경 및 천연 자원 부문의 교역과 투자를 위한 특정 규제 조건 제시	
	시행령 No. 121/2013/ND-CP	시공; 부동산 사업; 건축 자재의 운영, 생산, 사업; 기술 인프라(사회 기반 시설)의 관리; 주택 및 사무실 관리 등 관리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시행령 No. 142/2013/ND-CP	광물과 수자원 영역 관리 위반에 대한 제재 제시	

⁹ 2013. 11. 28. 국회(National Assembly)에서 개정되었다.

	시행령 No. 202/2013/ND-CP	광업권에 대한 보조금 계산법 및 청구 규정	
	시행령 No. 22/2012/ND-CP	광업권의 입찰	
	시행령 No. 12/2016/ND-CP	광업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환경보호세금	
	시행령 No. 15/2012/ND-CP	광물법 시행에 대한 세부규정 제시	
	공동회보 No. 61/2014/TTLT- BTNMT-BKHDT- BTC	기관과 개인에 의한 광물의 지질학적 기본 조사에 따른 자본 분배 절차 및 그 자본 분배 관리 안내	
물	수자원법		자원환경부
	회보 No. 27/2014/ TT- BTNMT	지하수 추출 등록, 발행 서류 일체, 수자원 허가증의 연장, 변경, 재발행에 대한 규제	
	시행령 No. 43/2015/ND-CP	수자원 보호 통로의 수립 및 관리 제시	
	시행령 No. 54/2015/ND-CP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자원 사용 활용을 위한 장려 조치 제시	
	시행령 No. 80/2014/ND-CP	폐수의 배수 및 관리	
	시행령 No. 201/2013/ND-CP	수자원 관련 법 규정 시행의 세부절차	
석유	환경세법		자원환경부 산업통상부
	석유법 일부 규정의 개정 및 보완 No. 0/2008/QH12		
	석유법 No. 18-L/CTN		
시행령 No. 33/2013/ND-CP	석유 및 가스 생산분배계약에 대한 표준 계약 승인		

	공동회보 No. 39/2014/TT	기본 가격 결정 방법; 가격 안정화 기금의 생성, 그리고 휘발유 및 석유 교역 부서의 2014. 9. 3.자 No. 83/2014/ND-CP 규정에 따른 관리, 이용 방법 및 휘발유와 석유의 가격 조절	
	회보 No. 43/2015/TT-BCT	석유 교역 과정에서의 연료 손실 비율	
	시행령 No. 97/2013/ND-CP	석유, 휘발유, 윤활유, 액화석유가스 교역에 있어서의 관리 위반에 대한 제재 제시	
	시행령 No. 83/2014/ND-CP	휘발유와 석유 교역	
	시행령 No. 100/2009/ND-CP	원유 가격 상승시 석유계약자의 이익분배에 따른 추가 비용 제시	
	시행령 No. 22/2010/TT-BTC	법령 No. 100/2009/ND-CP 개정 안내	
석탄	회보 No. 14/2013/TT-BCT	석탄 교역의 조건	산업통상부
	회보 No. 15/2013/TT-BCT	석탄 수출	
삼림	삼림보호및개발법		농림 (농촌개발)부
	시행령 No. 23/2006/ND-CP	삼림 보호 및 개발 관련 법 시행	
	시행령 No. 40/2015/ND-CP	법령 No. 157/2013/ND-CP 규정(삼림 관리, 개발, 보호 및 삼림 생산 관리 규정에 대한 관리상 위반에 관련한 벌칙 규정)의 2013. 11. 11.자 개정	
	시행령 No. 157/2013/ND-CP	삼림 관리, 개발, 보호 및 삼림 생산 관리 규정에 대한 위반에 대한 벌칙	

2. 광물법(Law 60 on Minerals)

가. 개요

2010. 11. 17. 개정된 광물법¹⁰은 총 11장 8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제2장 광물전략 및 광물기본계획(Mineral Strategy and Mineral Master Planning)

제3장 미개발 광물의 보호(Protection of Untapped Minerals)

제4장 광물자원의 기본지질조사(Basic Geological Surveys of Mineral Resources)

제5장 광물권역(Mineral Areas)

제6장 환경보호, 광업활동시 토지, 물, 사회기반시설의 이용(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Use of Land, Water and Infrastructure in Mineral Activities)

제7장 광물탐사(Exploration for Minerals)

제8장 광업권, 소광업권¹¹(Mineral Mining and Individual Mineral Mining)

제9장 재무 및 광업권입찰(Provisions on Financial Matters and Auction of Mineral Mining Rights)

제10장 광물에 대한 국가행정부의 책임(Responsibility for State Administration of Minerals)

제11장 기타

나. 세부내용

본 법은 광물에 대하여 탐사권(제7장)과 광업권(제8장)으로 분류하고, 탐사권¹²은 ① 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②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③ 베트남에 지점 등을 둔 외국기업 등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제34조 제1항), 광업권은 ① 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②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등에만 부여(제51조 제1항)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족기업은 일반건축재료로 사용되는 광물이나 소광업권에 대해서만 허용(제51조 제2항)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¹⁰ 광물법은 모든 광물에 대해서 적용되나 석유, 가스 및 물(광천수와 온천수는 제외)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광물법 제1조)

¹¹ 폐광하기로 결정된 광산의 잔존광물에 대한 광업활동에 국한되는 것(제67조)으로서 광업권 허가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더라도 5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68조)

¹² 탐사권의 허가기간은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의 연장은 수회 가능하나 총연장기간 역시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연장의 경우에는 매 연장시마다 허가장에 기재된 탐사지역의 최소 30%를 포기하여야 한다.(제41조 제2항)

한편, 탐사권 및 광업권의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자원환경부가 보유하고 있으나, 일반건축자재로 사용되는 광물, 소규모광물로 자연환경부에 의해 지정된 광물권역, 소광업권에 대해 허가권한은 지역인민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2조) 탐사권 및 광업권의 양도는 모두 허용되며(제43조, 제66조), 광업권은 국가가 비입찰지역으로 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78조 제1항)

광업권자는 ① 부존자원의 전부 내지 일부가 완전히 채굴된 경우, ② 부존자원의 전부가 채굴되지는 못하였으나 광업권의 허가기간¹³이 만료된 경우에 광산을 폐쇄할 것을 신청하여야(제73조) 하며, 주무허가기관은 동 신청을 승인하고 광산폐쇄에 따른 이행조치를 조율하여야 한다.(제75조)

3. 석유법(Law on Petroleum)

가. 개요

석유법은 199. 7. 06. 제정되어 2000. 6. 09., 2008. 6. 03. 각 개정되었는데, 총 제9장 제51조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법과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석유법의 규정이 적용¹⁴되는데, 각 장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석유개발 등(Petroleum Operations)

석유계약(Petroleum Contract)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Obligations of Contractors)

세금, 수수료(Royalty, Taxes and Fees)

석유에 대한 국가의 권한(State Management of Petroleum)

석유개발 등에 대한 감독(Inspection of Petroleum Operations)

위반에 대한 규제(Adjudication of Violations)

실행규정(Implementation Provisions)

¹³ 광업권의 허가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기간은 수회 연장될 수 있으나 연장된 총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제54조 제2항) 참고로, 광업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전 허가된 기간의 잔존기간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된다. 소광업권의 경우는 연장기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68조)

¹⁴ 제2a조

나. 세부내용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는 원유, 천연가스 및 자연상태에서 가스, 액체,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탄화수소를 의미하나, 석유가 추출될 수 있는 석탄 등 다른 광물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석유개발 등은 석유탐사, 유전개발, 석유채굴 등과 직접 연결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석유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계약상대방은 국적을 불문하며, 기관, 개인 등이 모두 허용된다. (제3조)

석유계약은 베트남의 국영기업인 베트남석유가스그룹(약칭 'PVN')과 본 법에 의해 체결되는데 (제14조), 석유계약은 정부가 마련한 특별규정에 따른 입찰을 통해 체결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수상은 계약상대방을 선정하여 입찰자로 지정할 수 있다.(제16조) 계약은 정부가 마련한 표준양식에 부합하여야 한다.(제15조) 석유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25년을 넘지 못하며, 그 중 탐사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투자권장광구¹⁵의 경우는 탐사기간 최대 7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은 3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5년을 넘지 못하고 탐사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한다. 계약기간의 경우 불가항력의 상황에 따른 계약의 일시적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기간은 정부에 의해 설정되나 3년을 초과하지는 못한다.(제17조)

체결된 석유계약은 수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투자서에 기술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제23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¹⁶의 경우도 수상의 승인이 있으면 수정된 투자서에 기술된 바에 따라 효력이 있으나 PVN에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있다.(제24조) 계약상 분쟁은 우선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해결하고 이를 통한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베트남국적인 경우에는 베트남법에 의해 베트남중재 또는 법원에 의해, 외국인인 경우에는 석유계약에 기술된 바에 따라 해결하되 국제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제27조)

석유계약당사자는 채굴된 석유에 대한 자신의 몫을 소유하고 수출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출할 수 있는 권리, 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등(제28조)이 있고, 베트남법에 규정된 세금¹⁷ 및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의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베트남 시장에 매각할 의무 등(제30조)이 있다.

¹⁵ 투자권장광구란 심해 또는 해상지역, 지정학적으로 매우 곤란한 지역이나 지질구조가 매우 복잡한 지역 및 수상이 지정된 광구가 있는 지역에서의 석유, 가스활동을 하는 광구를 의미한다.(제3조 제12항)

¹⁶ 양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양수인은 양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자본 또는 사업양도에 따른 투자법이 정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¹⁷ 자원세(제32조), 사업소득세(제33조), 수출세, 수입세 등 각종 세금(제35조)이 있다.

V. 비교법적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의 자원개발 관련 법제는 최근 들어 정비되어 가고 있고 동 법령들의 규범력이 확립되어 가는 추세라 하겠다. 그런데 베트남 자원개발 관련하여 우리나라 자원개발법령과의 비교를 한다면 출원주의¹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와는 달리 베트남은 입찰제도가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라 하겠는데, 이는 광물자원, 석유자원에 공히 적용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베트남 광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입찰을 통한 사업권(탐사권, 채광권 등)의 취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자원개발에 대한 태도에서도 상호주의¹⁹를 택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베트남 기업법에 따른 설립이 필요하기에 합작투자(Joint Venture) 등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조광권²⁰이 인정되지 않음도 국내법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¹⁸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광업법 제15조 제1항)

¹⁹ 국제법상 상호호혜주의를 말하는바, 상대국이 우호적이면 우리도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비우호적이면 우리 또한 비우호적으로 대응하는 주의이다. 우리 광업법은 이와 같은 상호주의를 채택하여 광업법 제10조의 2(외국인의 권리능력)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²⁰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광업법 제3조 제4호)

〈참고문헌〉

1. 서적 및 논문

계경문, 베트남 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과 정부형태개관, 2009

계경문의 2,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2009

김치환, 베트남의 사법제도 개관

외교부, 2015 에너지 현황 및 정책_베트남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법령구성체계, 2010

Elizabeth Dooley, Key Features of Vietnam's Legal System

Phan Thi Lan Huong, Overview of the Vietnam Legal System

2. 관련 법령

베트남 헌법

베트남 광물법

베트남 석유법

3. 인터넷 자료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41633>

<http://www.nyulawglobal.org/globalex/Vietnam.html>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country.cfm?iso=VNM>

<http://www.monre.gov.vn/wps/portal/english>